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6. 5. 25.

내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6년 5월 17일

. 회부일자 : 1996년 5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125회 임시회

. 제2차 내무위원회(1996. 5. 22)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 제4차 내무위원회(1996. 5. 25) 심의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증평출장소장 김 중 구)

가. 제안이유

공업단지조성사업 세입,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조성사업비를 독립회계인 특별회계를 제정 운영코자 하는 것 임.

나. 주요골자

○ 세입내역 : 보조금, 기채, 선수금, 기타수입금등

○ 세출내역 : - 토지매입비

- 지장물 보상비
 - 이주대책비
 - 조성사업의 공사비
 -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
 - 조성에 직접 소요되는 기채이자, 정산금,
이주대책 소요 사업비
 - 기타공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 전 입 : 독립채산 원칙
 - 세출부족액 발생시 일반회계 전입
 - 준용규정 : 조례이외의 내용은 일반회계 준용

3. 전문위원검토의견

(전문위원 오창환)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증평출장소 관내에 설치코자하는 공업단지 조성과 관련 그에 따른 추진 사업의 제반 여건상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 할 필요성이 있는바, 특별회계를 설치하되 이 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그 세입 분야에 있어서는 공업용지 매각대, 국비보조금, 지방비보조금, 기채, 납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세출의 분야는 토지매입비·지장물 보상비·공업용지조성공사비·부대시설비·사업비·기채이자·정산금·이주대책소요사업비·기타공업용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정하여 관리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지방공업단지의 육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하고 대도시와 연결된 입지적 조건상 공업단지육성에도 적지인것으로 판단되는바,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의 제3조(세출)의 조문중 “지장물보상비”를 “지상권보상비”로 자구수정.

7. 심사결과 : 수정동의안 6인중 6인 찬성으로 동조례 제정안 제3조(세출)의 조문중 “지장물보상비”를 “지상권보상비”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 기타부분은 도원안대로 의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 신구조문 대비표
-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